■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2. 9.>

[ ]사망 [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보상금 산정	결 정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